

「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」 안내문

□ 접수방법

- 신청기간: 2024. 3. 4.(월) ~ 12. 31.(화)
- 신청방법: 정부24 온라인 (www.gov.kr)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인 본인 방문 접수
(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방문 대리신청 허용: 위임장,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)

□ 지원대상 **[모두 충족]**

-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D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
- 연소득 ①(청년) 5천만원, ②(청년 외) 6천만원, ③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 - ※ 청 년: 만 18세 이상 ~ 만 39세 이하
 - ※ 신혼부부: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인 경우(연령 무관)
- ▷ 소급지원: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'24.6.30.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하여, '24.1.1. ~ '24.3.3.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

<지원 제외 대상>

-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
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↳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,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
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↳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등으로 임차인이 법인인지 확인
-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
□ 지원내용

-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(최대 30만원) 지원

구분	지원금액(최대 30만원)
청년 임차인	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
청년 외 임차인	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%
신혼부부 임차인	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

□ 제출서류 **[모든 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]**

-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, 본인명의 통장 사본
-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
-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
- ③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- ④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- 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(신청일이 7.1.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)
-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'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' 제출
-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

□ 문의 :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거복지팀, 각 동 행정복지센터